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들은 금융회사의 위험관리 기능과 내부통제를 강화하였다.

보험회사를 비롯한 금융회사에 발생하는 위험은 기업 차원에서 그치지 않고 소비자 피해와 함께 금융의 근간인 신뢰를 훼손하게 되고 나아가 금융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여러 수단이 동원된다. 전통적으로는 금융감독기관에 의한 공적 규제와 같은 외부통제가 중시되었으나, 대규모 금융사고 및 불완전판매 사태 등으로 그 한계가 노출되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업 내부에서 스스로 준법 및 건전 경영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내부통제의 중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내부통제(Internal control)의 개념은 역사적으로 다양한 논의를 통해 발전해왔으며 현재는 널리 사업운영의 효율성, 보고의 신뢰성 제고 및 법규·내부정책 준수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해 회사가 고안하고 모든 임직원에 의해 준수되는 일련의 통제 과정으로 정의된다.[1] 준법감시를 포함하나 그에 그치지 않고 위험관리, 내부회계 등 경영상 위험에 대한 전사적 관리체제를 포괄한다.

우리나라에서 내부통제제도의 법제화는 금융회사로부터 시작되었다. 국내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특히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2000년대 초 은행법, 보험업법 등 금융관계법률에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 제도가 도입되었다. 또한 개별 금융규제법에 따라 또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더라도 실무상 위험관리기준을 두고 위험관리책임자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았다.[2]

일반회사에 대해서는 2001년 재무보고에 관한 내부통제제도(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라 함)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처음 도입된 이래 현재는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

1) 최문희(2020a)
2) 임정하(2016), p. 145

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함)에서 이를 규율하고 있고, 2011년에는 상법 개정을 통해 상장회사에 대한 준법통제제도가 도입[3]되었다. 그러나 이는 각 내부회계관리 내지 준법통제에 국한된 것으로 상대적으로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내부통제 규제가 보다 광범위하다.

이후 오랜 논의를 거쳐 금융통합법률로서 2016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라 함)이 시행되면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규율하게 되었다.

그러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외에도 2021년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함)이 금융상품 판매행위와 관련된 내부통제 기준 및 조직 운영에 관해 별도 규정하는 등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관련 규제는 그 밖에 다양한 법률에 산재한다.

금융소비자보호, 자금세탁 등 불법금융거래방지, 개인(신용)정보의 보호 등 입법목적에 따라 다양한 법률이 서로 다른 규율사항에 대해 내부통제 관련 의무를 부과함에 따라, 보험회사를 비롯한 금융회사들은 내부통제체제를 구축함에 있어 우선 자신들에게 적용되는 내부통제 관련 법규를 파악하고 법률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법정 기준의 준수를 전제로 금융회사는 효율적 업무분장 및 조직구성을 통해 실효적 내부통제체계를 마련하게 된다 할 것인데, 서로 다른 법률에 산재된 내부통제 관련 규제들이 규제 준수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보험회사의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각 법률상 요구되는 내용적·조직적 요건을 명확히 하고, 향후 논의 및 개선이 필요한 쟁점에 관해 논한다.

본 보고서의 구성은 제2장에서 먼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보험회사 및 보험대리점의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주요 규제들을 법령별로 상세히 정리·검토하고 개별 쟁점에 대해 논한다. 이후 제3장에서는 법령 간의 내부통제 규제의 주된 차이점을 개관하고,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될 사항과 준법감시인 등 내부통제 수행업무 총괄담당자, 내부통제를 위한 위원회 등 운영조직, 위반 시 제재 등 항목별로 비교 분석하여 정리하고 적용관계를 밝힌다.

본 보고서가 보험회사가 내부통제 관련 규제를 준수하고 효율적 운영방안을 도출하는 데

3) 다른 법률에 따라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을 두어야 하는 상장회사는 제외(상법시행령 제39조)되므로 보험회사를 비롯한 대개의 금융회사들은 적용 제외됨

도움을 주고, 향후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보험산업의 발전을 위해 보험회사의 내부통제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발전하는 과정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선행연구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 후 이루어진 내부통제 규제 관련 주요 연구 중 박영준(2015)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정 후 시행을 앞두고 그간의 입법 경과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관련 규제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입법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전망을 제시하였다.

김병연(2016)도 법 시행 초기에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주요 규제 내용을 상세히 소개하면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조와 효율성 제고 관점에서 입법 내용을 평가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김종범(2018)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상의 내부통제 관련 규제 내용을 바젤은행감독위원회 은행지배구조지침상 내부통제와의 비교검토를 통해 개선방향을 제시하였고, 이효섭·이석훈·안수현(2022)은 주요국의 내부통제 제도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금융산업의 발전과 환경 변화를 배경으로 큰 틀에서 내부통제기능의 활성화 내지 강화를 위한 개선과제 등을 다루었다.

한편, 신광원(2021)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내부통제제도에 관해 상세히 소개하면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관련 규제와 일부 쟁점에 대해 비교·분석하고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역할에 관해 비판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보험회사 및 보험대리점 등 보험산업에 적용되는 다양한 법률상 내부통제 관련 규제의 내용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그 적용관계와 세부 쟁점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이가 있다. 현행 규제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중심으로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등 수범자에게 내부통제 관련 규제를 해석하고 준수하는 데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고, 규제의 명확성과 효율성의 관점에서 쟁점을 파악하여 향후 내부통제 관련 규제 합리화에 시사점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